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신매매퇴치감시국

2018 년도 인신매매보고서

3 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 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3 등급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정치적 탄압 시스템의 일부인 기존의 수용소 강제노동,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학생들에 대한 강제 노동 촉진, 외국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수출을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했다. 정부는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정부재정 및 기타 불법활동을 충당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조사하거나 보호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권고사항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및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을 포함해, 강제노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착국에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에 대한 즉결처형 및 기타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와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국제법에 준해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 기소하고 인신매매범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이동과 통신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강압적 수단을 폐지해야 한다. 강제노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임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 인권감시단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생활 및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이직을 허용해야 한다. 2000 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를 준수해야 한다.

사법 처리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집행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법률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법집행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서, 만약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면,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기소, 또는 유죄 선고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미확인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범들은 착취한 사람들의 수에 근거해 형을 선고받는데, 형량은 강제 노동수용소 10 년형에서 종신형 또는 사형이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공무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어떠한 보호노력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고, 비정부기구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다. 보고기간 동안에,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심문소로 보내져 간수에 의한 성폭력, 강제 낙태, 강제 노동, 고문에 노출되었으며, 결국 수용소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월경했다는 이유로 송환된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보고에 의하면 정부는 임신한 상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에게 강제 낙태를 종용했으며 강제 송환된 피해자가 수감 중에 분만한 태아는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에게서 태어난 아동 2~3 만 명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태어난

아동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국적자 신분이기 때문에 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 30 조는 수용소 수감자의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수용소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확대했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내의 정부 억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선택함으로써 기착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협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거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신매매 적발을 위해 국경 주변 이주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수요나 강제노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은 2000 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신매매 개요

지난 5 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북한은 강제 노역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북한 내에서 강제 노역은 제도화된 정치적 억압의 수단이며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북한 정부는 대규모 인력 동원을 통해 그리고 자국 수용소 내에서 주민들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사회계층에 따라 작업을 배정한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8~12 만 명을 그리고 노동 수용소 등 다른 형태의 구금시설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 수감자는 정식으로 입건 혹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공정한 사법적 심리를 거쳐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수감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에 걸쳐 벌목, 채굴, 경작 등의 강제 노역을 강요받는다. 정치범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구타, 고문, 강간, 의료 서비스의 부재,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 상당수 수감자는 수감 기간 중에 사망한다.

북한 정부는 도, 지방, 지구 단위로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중노동을 강요하고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구타를 포함하여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당국은 불법 장사에 연루된 자나 무직인 자를 노동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학생들을 종종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현장으로 보내 주요 도로의 제설작업이나 생산목표 달성과 같은 특별 사업을 완수하는 일을 돕도록 했다. 강제노동으로 인해, 학생들은 육체적·심리적 피해, 영양실조, 탈진, 성장결핍을 겪는다. 정부의 지시로 학교는 대학생을 포함하여 14 세 이상의 학생들로 하여금 1 년에 두 차례, 가장 한 달간 농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제한다. 학교가 정한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은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다. 또한 교장과 교사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강제로 농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착취한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와 맺은 양자계약 등에 따라 정부가 해외로 파견한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노동 상태에 직면한다.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 다수가 한번에 가장 3 년 동안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유해한 온도에서 과도하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 정부 소속 ‘감시인(minder)’들은 그들의 이동과 통신을 제한하고 감시한다. 이들 근로자는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 근로자들의 급여는 압류되어 종종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북한 정부는 정부 사업에 대한 각종 ‘자발적’ 기여금 명목으로 급여의 대부분을 갈취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되는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수령하며 목표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수령한 임금의 70~90 퍼센트를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1 조원이 넘는) 수억 달러에 이르며 북한정부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보고에 의하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가 귀국할 때까지 당국에서 보관하므로 착취와 강압의 위험성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이들 근로자는 하루 평균 12~16 시간, 때로는 하루 가장 20 시간을 일하며 한 달에 고작 하루나 이틀만을 쉴 수 있다. 보고기간 동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신규 근로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2019년 말까지 국제 인권 및 난민법에 준해 기존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조치했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보고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무려 10만 명이 북한체제를 위한 수입 획득을 위해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 다수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보고기간 동안에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버마, 캄보디아, 적도 기니, 이디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기니,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리비아, 말리, 말레이시아,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세네갈, 싱가포르, 남수단, 탄자니아, 대만, 태국, UAE,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한다.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압력을 가하자, 몇몇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새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했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후에 일부 기존 노동자들을 추방했다.

북한 정부의 가혹한 인권유린은 인접국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 다수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며,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그들에 의해 약물을 주입받거나 감금 또는 납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는 강제 결혼을 통해 매춘, 가사 노동, 농사일, 혹은 다른 유형의 일을 강요받는다. 이들 여성은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 남성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집창촌 또는 인터넷 섹스 사이트를 통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접대부로 종사한다. 이런 희생자들은 신분증명서가 없거나 중국 남성들의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망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이나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